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559호

2019. 12. 31.(화)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7381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7382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7383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7384호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7385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7386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7387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7388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7389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7390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7391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7392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7393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7394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7395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제7396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7397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제7398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7399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7400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7401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7402호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8
제7403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제7404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제7405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제740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7407호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제7408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7409호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38
제7410호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40
제741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44
제7412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7413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7414호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51
제7415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제7416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제7417호 서울특별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7418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7419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7420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제7421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7422호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61
제7423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68
제7424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7425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7426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7

[규 칙]

제4312호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02
--	-----

◆ 서울특별시조례 제7407호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재능기부활동으로써, 현행 마을세무사의 자격요건을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나. 자격요건을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로 완화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 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마을세무사의 자격요건 중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로 개정함(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